

비 고	No	No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0 auto; width: 80%;"> (과태료·범칙금)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</div>
<p>1. “(과태료·범칙금)부과 및 견인대상차량”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.</p> <p>2.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“(과태료·범칙금)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” 표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.</p>	<p>1. 위반일시 년 월 일</p> <p>2. 위반장소:</p> <p>3. 등록번호:</p> <p>4. 적용법조:</p> <p>5. 보관장소:</p> <p>6. 취급자: 소 속 : 성 명 :</p>	<p>○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「도로교통법」(제156조·제160조 및 제161조)에 따라 (과태료·범칙금)이 부과되며,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.</p> <p>○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(구청 지역교통과)</p> <p>(전화: -)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차량 소유자 귀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</p>	↑ 15cm

←10cm→
←20cm→

300mm×150mm(일반용지 60g/m²)